

창원지방법원 2020. 2. 14 선고 2018나6079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향, 임소라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

변론 종결 2020. 1. 17.

판결 선고 2020. 2. 14.

제 1 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. 9. 20. 선고 2016가단109355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4. 2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행 및 제3면 첫째행의 "원고는 2016.2. 4. 이 법원에 D, 피고, I, E을 상대로 이혼, 위자료,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 계속 중이다(2016드단50485)."를 "원고는 2016. 2. 4. 이 법원에 D, 피고,I, E을 상대로 이혼, 위자료,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(2016드단50485)2019. 5. 17.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, D이 항소하였다가 2019. 8. 27. 항소를 취하하였다."로 고치고,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'2.추가판단'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, 매도인 F, G는 이러한 사정을 몰랐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 2억 9,9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2억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(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다90883 판결참조).

2) 원고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의 근거로, 7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은 P의 자력이 부족했던 점, I 이 평소 D과 여러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,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까지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모두 D과 혼인생활 중 취득한 원고의 재산이고, L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, 임대차계약서 등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며, 원고와 혼인 중이던 D이 위 부동산 취득 직후부터 원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위 부동산 관련 각종 비용과 세금을 납부하고 위 부동산 임차인들로부터 월 차임을 수령하여 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.

살피건대, 을 제2 내지 11, 15호증의 각 기재, 제1심법원 증인 D의 증언, 제1심법원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마산우체국, 창원북면우체국, H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까지 피고에게 K으로부터의 급여,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휴업급여, 산재사고와 관련한 우체국보험으로부터의 보험금 등 수입이 있었던 점, 이 사건 매매대금 2억 9,900만 원 중 2억 3,900만 원은 D 계좌 또는 피고계좌에서 인출하였거나(그 중 7,000만 원은 피고가 외삼촌인 P와 이모 I 으로부터 피고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 계좌에서 다시 인출한 것이다)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금원이다.

② 이 사건 매매잔금을 위하여 대출받은 1억 1,000만 원은 피고의 이모인 I 이 2012. 8. 9. 모두 변제하였다.

③ 이 법원의 T은행에 대한 2019. 5. 7.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한 P의 일부 거래내역만으로 P의 무자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. I과 D의 각종 은행거래내역만으로는 각종 송금의 원인을 쉽사리 추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P와 I 이 피고에게 잔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던 7,000만 원이 곧 원고 또는 D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. 일정기간 동안 피고의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, 특정시점, 즉, 이 사건 매매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각 대금지급일에 피고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곧바로 원고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
④ 피고의 소득을 비롯한 재산은 평소 모 D이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, 원고와 D은 이 사건

부동산 매수 이후 출공 위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,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여전히 위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원고는 위 부동산 등기필증, 임대차계약서 등 권리관계서류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.

3) 따라서 피고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박평균, 판사 강진명, 판사 구경모